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4. 3. 1.
개정 2005. 3. 1.
개정 2006. 3. 1.
개정 2007.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0. 3. 1.
개정 2011. 6.13.
개정 2012.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18.11. 2.
개정 2019. 4.22.
개정 2019.11.27.
개정 2020. 5.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추계예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편제) ①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이하 “각 대학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연구 및 교육하여 창의적인 학술연구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등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예술경영, 영상시나리오, 실용음악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로서의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 및 문화예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개정 2018.3.1.)

3.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연구·교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질적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국악교육지도자와 국악문화예술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개정 2015.3.1.)

제 2 장 과정, 정원, 학과, 전공 및 전과, 전공변경

제4조(과정) ①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을 둔다.

②대학원의 학위과정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석사 및 박사학위를 통합하는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3.1.)

③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5조(정원 및 학과)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과 학과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이 모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개정 2020.5.12.)

제6조(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편입학·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4.3.1.)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7조(전과, 전공변경) ①전과는 동일 대학원,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2.)(개정 2019.11.27.)

②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27.)

제 3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8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4.3.1.)(개정 2018.11.2.)

제9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발급 관

런 전공은 현직 교원 또는 입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표시과목이 동일한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4.3.1.)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4.3.1.)

3. 석박사통합과정

가. 동조 제1호 석사학위 과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5.12.)

나.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동일학과를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사람 (신
설 2018.3.1.)

제10조(입학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은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
학전형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11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대학원 입시내규로 정한다. (개
정 2018.11.2.)

제1호 내지 제8호 삭제(2014.3.1.)

제12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 연구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
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의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신입생수 중 재
적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개정
2020.5.12.)

② 삭제 (2014.3.1.)

③ 편입학자의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학기 차 편입
일반대학원 12학점, 특수대학원 10학점 이내, 3학기 차 편입 18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개정
2018.3.1.)(개정 2018.11.2.)

④ 편입학의 자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입시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
학정원에서 입학학년도 재적생을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10.3.1.)(개정 2014.3.1.)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사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③ 재입학자의 종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등 록 및 학 적

제15조(등록)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입

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7학기를 각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개정 2020.5.12.)

③ 삭제 (2014.3.1.)

④ 제2항에 규정된 학기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1을,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4.3.1.)

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논문, 작품, 연주, 학위취득시험 등을 남겨둔 학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⑥ 연구등록은 정규등록금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입하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2014.3.1.)

제16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납입금 또는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과오납, 자퇴,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시 등록금반환요청서에 따라 반환하며,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4.3.1.)

제17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② 수료시 까지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 입대 또는 출산육아, 해외연수 및 해외과건근무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4.3.1.)

③ 수료자중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논문청구과정 및 과목추가이수과정, 학위청구 연주과정, 학위청구작품과정에 등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람은 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개정 2018.3.1.)

제18조(복학) 휴학한 사람이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4.3.1.)

1.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3.1.)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3.1.)
3.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개정 2014.3.1.)

제20조(자퇴)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 5 장 수업연한, 이수학점, 교과과정 (개정 2014.3.1.)

제21조(수업연한) (조문개정 2014.3.1.)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1.5년, 박사학위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3.5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개정 2018.3.1.)(개정 2018.11.2.)

② 삭제 (2014.3.1.)

③ 삭제 (2014.3.1.)

제22조(수업) ①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은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②수업은 대학원의 경우 주간수업을, 특수대학원의 경우 야간수업을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대학원장이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③수업은 각 대학원별, 각 과정별, 학과 또는 전공별로 특성에 맞게 현장(실습) 수업 및 학술대회(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타 대학원 또는 타 전공과 합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④계절학기는 여름계절학과 겨울계절학기로 구분하며, 대학원·학과(또는 전공)·분야별로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달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제23조(교과과정)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4.3.1.)

제24조(이수학점)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학점 및 연구학점은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3.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신설 2018.3.1.)
4.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4학점 (개정 2018.3.1.)
5. 교육대학원: 24학점 (개정 2018.3.1.)

②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에 정한 각 대학원별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논문학점 및 연구학점은 매 학기 기준 학점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1. 대학원: 12학점 (개정 2018.3.1.)
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10학점 (개정 2018.3.1.)
3. 교육대학원: 10학점 (개정 2018.3.1.)

③특수대학원의 과목추가이수과정의 학생은 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제25조(선수과목) ①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중등학교 교사로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교육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②선수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성적이 B⁰(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성격상 학부에서 이수가 곤란한 경우는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③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을 위한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 학기 이수학점 초과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전공 자격 취득)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중등학교 교사인 학생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 (개정 2014.3.1.)
2. 소지한 자격증과 다른 표시과목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14.3.1.)
3. 교원자격 검정령의 부전공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14.3.1.)
4.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대학원장이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4.3.1.)

제27조(부전공 자격 표시)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 그가 소지한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개정 2014.3.1.)

제28조(보충과목의 이수) ①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생 중 타 학과 출신자, 비전공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는 정규과목 외 소정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학기 이수학점 초과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③보충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10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방법 및 점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비 고
A+	4.5	95 - 100	우 수
A0	4.0	90 - 94	
B+	3.5	85 - 89	우 량
B0	3.0	80 - 84	
C+	2.5	75 - 79	양 호
C0	2.0	70 - 74	
F	0	69점 이하	불 량 합 격 불합격 보류
P	없음	없음	
NP	없음	없음	
I	없음	없음	

제30조(이수학점의 인정 및 평점) ①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 등급이 C⁰(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이수한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한다.

- 제31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 등록이상 등록을 마치고 각 대학원별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
- ②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 있어 규정된 필수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총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⁰(평점 3.0) 미만인 사람은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
- ③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과정, 위탁과정 및 공개강좌 (개정 2018.11.2.)

- 제32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특수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수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②각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서 연구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연구과정의 수료는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제33조(연구실적증명)** 연구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제33조의2(위탁과정)**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과정을 둘 수 있으며, 입학자는 연구과정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탁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2.)
- 제34조(공개강좌)**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 7 장 학위청구 및 자격시험

- 제35조(학위청구)**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며, 학과별 학위청구과정은 별표3에 의한다. (개정 2018.3.1.)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학위청구연주, 학위청구작품 제출(개정 2018.3.1.)
 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과목추가이수, 학위청구연주,

학위청구작품 제출 (개정 2014.3.1.)(개정 2018.3.1.)

3. 교육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과목추가이수 (개정 2014.3.1.)

제36조(자격시험)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자격요건은 각호의 해당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작품 및 학위청구연주)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2. 특수대학원 학위청구논문과정: 자격시험 없음

3. 특수대학원 과목추가이수과정: 외국어시험, 학위취득시험

[전문개정 2014.3.1.]

4. 특수대학원 학위청구연주과정 및 학위청구작품과정: 외국어시험 (신설 2018.3.1.)

5.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예체능계열 TOPIK 3급, 인문사회계열 TOPIK 4급) 자격 취득

제37조(외국어시험)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각 대학원장은 전공학문 연구상 외국어시험을 제1외국어 및 제2외국어로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제2외국어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③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취득시험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38조(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조문개정 2014.3.1.) ①종합시험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 중 석사과정의 학생은 2과목을, 박사과정의 학생은 3과목을 각각 선택하여 응시한다. (개정 2014.3.1.)

②특수대학원에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취득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③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취득시험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4.3.1.)

제 8 장 학위논문 및 과목추가이수과정, 학위청구연주과정, 학위청구작품과정 (개정 2014.3.1.)(개정 2018.3.1.)

제3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4.3.1.)

1.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사람 (개정 2014.3.1.)

2. 각 대학원별 규정된 필수과목 학점을 이수하고 재학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예정인 사람 (개정 2014.3.1.)

3. 취득학점의 총 평균 평점이 B⁰(3.0) 이상인 사람 (개정 2014.3.1.)
4.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특수대학원은 제외 (개정 2014.3.1.)
5. 연구등록 대상자는 연구등록을 마친 사람 (개정 2014.3.1.)
6. 2학기이상 학위논문 지도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거나 또는 예정인 사람 (개정 2014.3.1.)(개정 2018.3.1.)

제4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삭제 (2014.3.1.)

-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최소한 학위수여일 2개월 전에 학위청구논문을 각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 ③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원과 함께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② 학과장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제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 (개정 2015.3.1.)
- ③ 심사위원의 구성은 석사학위 3인, 박사학위 5인으로 한다.

제42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 심사위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1.)

제43조(학위논문의 공표 및 지도) 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 정기간행물, 외국 국제학술지, 학술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제1항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과목추가이수과정)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 과목추가이수과정을 둔다.

- ②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과정과 과목추가이수과정이 설치되어있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 이내에 학위청구과정중 하나를 학과장의 승인 하에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사람의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사람 (개정 2018.3.1.)
2.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평점이 B⁰(3.0) 이상인 사람
3. 학위취득시험 응시학기에 과목추가이수지정과목 6학점을 취득했거나 예정인 사람

- ④ 특수대학원의 과목추가이수과정의 학위취득시험은 평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⑤ 각 대학원 과목추가이수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

제43조의3(학위청구연주과정 및 학위청구작품과정) ①각 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청구 연주과정, 학위청구작품과정을 둔다.

②학위청구연주과정 및 학위청구작품과정이 설치되어있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 이내에 학위청구과정 중 하나를 학과장의 승인 하에 선택하여야 한다.

③학위청구연주과정 및 학위청구작품과정 심사 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사람
2.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사람

[본조신설 2018.3.1.]

제43조의4(석박사통합과정) ①석박사통합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만 제출한다.

②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으로 같음하며,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종합시험을 인정하며, 부족한 과목을 추가로 응시하여야 한다.

③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하며, 통합과정 수학 중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통합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본조신설 2018.3.1.]

제 9 장 학위수여 및 취소

제44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별표 2의 학위종별표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4.3.1.)

②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한다.

제45조(학위기) ①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②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18.3.1.)

제46조(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 10 장 장학 및 상벌

제47조(장학금) ①본 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에 의한다.

제48조(상벌) ①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②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장 학생활동 및 학생지도

제49조(원우회) ①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각 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원우회의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0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51조(학생지도) 각 대학원장은 교육, 연구, 논문 및 학생활동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어 지도할 수 있다.

제 12 장 조직 및 대학원위원회

제52조(조직) ①본 대학교 각 대학원에는 원장과 필요한 교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각 대학원에는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각 대학원 원장과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5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 및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5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6조(임기) 각 대학원의 원장, 학과장 및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5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학칙개정 절차

제59조(학칙개정 및 공포) ①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총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5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은 정지된다. (개정 2014.3.1.)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학칙) 본 학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1. 2004년 3월 1일전의 문화산업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동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06년 3월 1일부터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분석전공은 문화산업경영학과 문화산업애널리스트전공에, 영화비즈니스전공, 음악비즈니스전공, 게임비즈니스전공, 애니메이션비즈니스전공, 아트마켓비즈니스전공은 문화산업경영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본 학칙 제44조(학위수여) 별표 2의 학위수여에 불구하고 2004년 3월 1일전에 문화산업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학위취득자에 한하여 2004년 3월 1일 개정시행전의 학칙 제34조(학위수여) 별표 1의 학위를 수여한다.
3. 본 학칙 제3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3월 1일전에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 중 학위논문 지도를 “1학기이상 학위논문 지도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변경시행전의 예술경영대학원, 영상문예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본 학칙 변경시행전의 소속 대학원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08년 3월 1일부터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위 1호와 관련된 대학원의 모든 학사업무는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이 관장한다.
3. 본 학칙 변경시행전의 예술경영대학원, 영상문예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재적중인 자의 재학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 규정 및 매학기 이수학점 초과 제한규정은 변경전 학칙 제24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재적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시행 당시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산업경영학과 문화산업경영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마케팅전공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산업경영학과 문화산업애널리스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애널리스트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학칙 변경시행일전의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산업경영학과 문화산업경영전공 및 문화산업애널리스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학칙변경전의 학과 및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2009년 2월 28일까지 동 학과 및 동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09년 3월 1일부터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마케팅전공 및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애널리스트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
- 제2조(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변경 및 최저 이수학점 변경 적용) 본 학칙 변경시행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2년 및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 24학점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교육대학원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변경 및 최저 이수학점 변경 적용) 교육대학원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변경 적용과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의 변경 적용은 2010학년도 편입생 및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통합되는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2.3.1.부터 통합된 전공의 학생으로 본다.

가.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과 “문화기획전공” 은 “문화예술경영전공” 으로,

나.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애널리스트전공” 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마케팅전공” 은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 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제3조(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수업연한 변경 적용) 본 학칙 변경 시행에 따른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수업연한 2년 적용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예술경영대학원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변경 적용) 문화예술경영대학원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변경 적용은 2013학년도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영구수료된 사람에 대하여 영구수료를 취소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③(수료생 중 휴학생 처리) 수료 후 휴학 중인 사람은 휴학을 취소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등록 후 희망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2. 통합되는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에 재적중인 학생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3. 통합되는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 재적생의 이수과목은 “문화예술경영학과” 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13조제3항은 2018학년도 제2학기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제43조의4제3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영구수료생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위청구연주과정 또는 학위청구작품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 2. 제36조는 2020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대학원 박사과정 음악학과 신설 및 석사과정 음악학과 민족음악분야 신설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3.1.)(개정 2018.3.1.)(개정 2018.11.2.)(개정 2019.11.27.)(개정 2020.5.12.)

학위과정별 · 학과별 · 전공별 입학정원표

1. 대학원

구 분	과 정	학 과	입학정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음악학과(국악,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합창지휘)	16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문화예술행정경영,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석사학위과정	음악학과(국악,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민족음악)	69
		미술학과(동양화, 서양화, 판화)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문화예술행정경영,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구 분	과 정	학 과	전공 및 분야	입학정원
문화예술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40
		영상시나리오학과	영상시나리오전공	
		컨템포러리미디어 뮤직학과	필름스코어링분야 뮤직프로듀싱분야	
		실용음악학과	재즈분야	

3. 교육대학원

구 분	과 정	전 공	입학정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악교육전공	15
		국악문화예술교육전공	

【별표 2】(개정 2014.3.1.)(개정 2018.3.1.)(개정 2018.11.2.)(개정 2019.11.27.)(개정 2020.5.12.)

학위과정별 · 학과별 · 전공별 학위종별표

1. 대학원

구 분	과 정	학 과	학 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음악학과(국악,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합창지휘)	음악연주학박사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문화예술행정경영,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문화예술학박사
	석사학위과정	음악학과(국악,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민족음악)	음악학석사
		미술학과(동양화, 서양화, 판화)	미술학석사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문화예술행정경영,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문화예술학석사

2.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구 분	과 정	학 과	학 위
문화예술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석사(문화예술경영)
		영상시나리오학과	영상시나리오학석사(영상시나리오)
		컨템포러리미디어 뮤직학과	실용음악학석사(필름스코어링, 뮤직프로듀싱)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석사(재즈)

3. 교육대학원

구 분	과 정	전 공	학 위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악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악교육)
		국악문화예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악문화예술교육)

【별표 3】(신설 2018.3.1.)(개정 2019.11.27.)

학과별 학위과정표

대학원명	과정명	학과(전공)명	학위과정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음악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문화예술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석사학위과정	음악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학위청구연주과정
		미술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학위청구작품과정
		문화예술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
		영상시나리오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
		컨템포러리미디어뮤직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학위청구작품과정
		실용음악학과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학위청구연주과정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악교육전공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
		국악문화예술교육전공	학위청구논문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소정의 석사학위과정(연구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00 대학원장 00 학박사 000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00 학박사 000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11.2.)

제 호

연구실적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의 연구과정에서 0년간 00을 전공
으로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00 대학원장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위취득 심사에 합격하여 000 학석사(0000 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00 대학원장 00 학박사 00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학석사(00전공)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00 학박사 000 (인)

학위번호: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0 0학과 0 0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0 0 0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장 0 0 학박사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0 0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0 0 학박사 0 0 0 (인)

학위번호: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000 위탁과정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00 대학원장 00 학박사 000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00 학박사 000